

# 변경 대비 표(일반 및 자펀드)

## 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운용 역 변경	모펀드 운용역 변경	환매수 수수료 삭제	가입자 격 변경	변동 성	결산	법 개정
1	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	○	-	-	-	-	-	-
2	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투자신탁(주식)	-	○	-	-	-	-	-
3	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	-	○	-	-	○	○	-
4	미래에셋인텍스로차이나증권투자신탁(주식)	-	-	○	-	-	-	○
5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1호(H)(주식)	-	-	○	○	-	○	○
6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1호(UH)(주식)	-	-	○	○	-	-	○
7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2호(H)(주식)	-	-	○	○	-	-	○
8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2호(UH)(주식)	-	-	○	○	-	-	○
9	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-파생형)	-	-	○	-	-	-	○
10	미래에셋3억만들기술로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11	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-1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12	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13	미래에셋AI스마트베타EMP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	-	-	-	-	○	-
14	미래에셋EMP스마트포커스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	-	-	-	-	○	-
15	미래에셋KorChindia포커스7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-	○	-
16	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1호	-	-	-	-	○	○	-
17	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18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19	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-	-	-	-	○	○	-
20	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1호(채권-재간접형)	-	-	-	-	○	○	-
21	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9-2호	-	-	-	-	-	○	-
22	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1호투자회사	-	-	-	-	-	○	-
23	미래에셋맵스프린티어브라질월지급식부동산투자신탁1호(분배형)	-	-	-	-	-	○	-
24	미래에셋맵스호주부동산투자신탁2호	-	-	-	-	-	○	-
25	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(주식)(H)	-	-	-	-	-	○	-
26	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(주식)(UH)	-	-	-	-	-	○	-
27	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28	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29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30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31	미래에셋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32	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33	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(분배형)	-	-	-	-	○	○	-
34	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투자신탁1호(UH)(채권)	-	-	-	-	○	○	-
35	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-	-	-	-	○	○	-

36	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(주식)	-	-	-	-	○	○	-
37	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38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2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39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-3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40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(주식)	-	-	-	-	○	○	-
41	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42	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-	-	-	-	○	○	-
43	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44	미래에셋재형글로벌성장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45	미래에셋좋은기업ESG증권투자신탁(주식)	-	-	-	-	○	○	-
46	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2호(주식)	-	-	-	-	-	○	-
47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48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-	-	-	-	○	○	-
49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-	-	-	-	○	○	-
50	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
2. 변경 사항:

1) 운용역 변경

2)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

3) 환매수수료 삭제

4)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

5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6)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

7)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

3. 효력발생 예정일: 2019년 4월 16일(화)

4. 변경 내용:

1) 운용역 변경

<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>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<u>이승환</u> , 이재일	<u>목대균</u> , 이재일

2)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

<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투자신탁(주식)>

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<u>이승환</u>	<u>목대균(책임), 강영수(부책임)</u>

<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>

미래에셋마에스트로이머징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<u>이승환</u>	<u>목대균</u>

3) 환매수수료 삭제

[집합투자규약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41조(환매수수료)	<p><u>&lt;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(H)(주식)&gt;</u>  <u>&lt;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(UH)(주식)&gt;</u>  <u>종류A, 종류A-e, 종류AG</u>  <u>: 30일 미만: 이익금의 10%</u></p> <p><u>종류C, 종류C2, 종류C3, 종류C4, 종류C-e, 종류C-e2, 종류C-e3, 종류C-e4, 종류C-a, 종류C-b, 종류F</u>  <u>: 3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  <u>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 30%</u></p> <p><u>&lt;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(H)(주식)&gt;</u>  <u>종류A, 종류A-e, 종류CG</u>  <u>: 30일 미만: 이익금의 10%</u></p> <p><u>종류C1, 종류C2, 종류C3, 종류C4, 종류C-e, 종류C-a, 종류C-i, 종류직판F, 종류S</u>  <u>: 3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  <u>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 30%</u></p> <p><u>&lt;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(UH)(주식)&gt;</u>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	<p><u>종류A, 종류A-e, 종류CG</u> : 30일 미만: 이익금의 10%</p> <p><u>종류C1, 종류C2, 종류C3, 종류C4, 종류C-a, 종류C-I, 종류직판F, 종류S</u> : 30일미만: 이익금의 70% 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<u>&lt;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-파생형)&gt;</u> 종류A, 종류A-e : 30일 미만: 이익금의 10%</p> <p><u>종류C1, 종류C2, 종류C3, 종류C4, 종류C-e, 종류C-I, 종류F, 종류S</u> : 30일미만: 이익금의 70% 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<u>&lt;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증권투자신탁(주식)&gt;</u> 종류C-e, 종류CG, 종류C-i, 종류C-W, 종류A-U :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	
--	--	--

[투자설명서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<p><u>&lt;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1호(H)(주식)&gt;</u> <u>&lt;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1호(UH)(주식)&gt;</u> 종류A, 종류A-e, 종류AG : 30일 미만: 이익금의 10%</p> <p><u>종류C, 종류C2, 종류C3, 종류C4, 종류C-e, 종류C-e2, 종류C-e3, 종류C-e4, 종류C-a, 종류C-b, 종류F</u> : 30일미만: 이익금의 70% 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<u>&lt;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2호(H)(주식)&gt;</u></p>	<p><u>환매수수료 없음</u></p>

<p><u>종류A, 종류A-e, 종류CG</u> : 30일 미만: 이익금의 10%</p> <p><u>종류C1, 종류C2, 종류C3, 종류C4, 종류C-e, 종류C-a, 종류C-i, 종류직판F, 종류S</u> : 30일미만: 이익금의 70% 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&lt;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(UH)(주식)&gt;</p> <p><u>종류A, 종류A-e, 종류CG</u> : 30일 미만: 이익금의 10%</p> <p><u>종류C1, 종류C2, 종류C3, 종류C4, 종류C-a, 종류C-I, 종류직판F, 종류S</u> : 30일미만: 이익금의 70% 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&lt;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-파생형)&gt;</p> <p><u>종류A, 종류A-e</u> : 30일 미만: 이익금의 10%</p> <p><u>종류C1, 종류C2, 종류C3, 종류C4, 종류C-e, 종류C-I, 종류F, 종류S</u> : 30일미만: 이익금의 70% 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&lt;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(주식)&gt;</p> <p><u>종류C-e, 종류CG, 종류C-i, 종류C-W, 종류A-U</u> :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	
--	--

4)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

<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(H)(주식)>

<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(UH)(주식)>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종류F>	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	-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

	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(종전의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) <u>&lt;신설&gt;</u>	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(종전의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) - <u>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</u> - <u>판매회사의 일임·자문 계좌(랩어카운트, Wrap Account)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</u> - <u>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</u>
--	--	--

<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2호(H)(주식)>

<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2호(UH)(주식)>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u>&lt;종류직판F&gt;</u>	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(종전의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) <u>&lt;신설&gt;</u>	-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(종전의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) - <u>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</u> - <u>판매회사의 일임·자문 계좌(랩어카운트, Wrap Account)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</u> - <u>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</u>

### 5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3억만들기술로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3	3	11.95	13.26
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-1호(주식)	3	3	12.39	13.88
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3	3	12.13	13.55
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1호	6	6	0.03	0.02
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-	7.37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-	15.54
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5	5	1.68	1.69
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1호(채권-재간접형)	5	5	4.25	4.09
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19.15	17.71
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3	3	13.17	14.02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<b>2</b>	<b>3</b>	<b>16.06</b>	<b>14.05</b>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3	3	14	13.04
미래에셋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3	3	12.48	13.48

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3	-	14.02
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(분배형)	5	5	1.68	1.68
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투자신탁1호(UH)(채권)	4	4	-	7.67
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4	4	7.95	7.45
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	3	3	11.51	12.2
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(주식)	4	4	5.64	5.09
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3	3	14.91	13.93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2호(주식)	3	3	11.55	13.45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-3호(주식)	3	3	12.42	13.94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(주식)	3	3	11.6	13.5
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3.86	3.99
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5	5	1.68	1.68
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4.32	4.2
미래에셋재형소비성장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4.08	4.69
미래에셋좋은기업ESG증권투자신탁(주식)	3	3	11.11	13.14
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3	3	11.74	12.85
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5	5	1.4	1.33
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5	5	1.68	1.69
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1	1	28.04	29.66

## 7)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

### 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b>제20조 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b>	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(이하생략)</p>	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자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(이하생략)</p>
<b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b>	<p>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</p>	<p>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 (좌동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b>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b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</p>

	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	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
<b>제49조(금전 차입 등의 제한)</b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<b><u>3.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</u></b></p>

[투자설명서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<b>제5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[의무해지]</b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장폐지된 경우(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) /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/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/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</li> <li>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.</li> </ul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장폐지된 경우(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) /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/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/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</li> <li>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b><u>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</b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.</li> </ul>

**미래에셋자산운용(주)**